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노후준비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권자 변경 등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수립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중단·폐지 또는 재개절차 마련(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1, 제7조의4 신설)
- 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정 및 중단·폐지·재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8조, 제10조)
- 라. 현행 지역센터 평가 절차 규정에 광역센터도 포함하고 광역·

지역센터의 평가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11조)

마. 광역·지역센터의 장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준비 종합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바. 현행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광역센터를 포함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제3조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6호”를 “법 제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6.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의 평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지정하거나 혹은 영 제7조의2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 없이 제1항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직접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광역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관 등의 설립 목적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3. 그 밖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3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 및 제공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2.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구성한 광역노후준비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광역센터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4(광역센터의 중단·폐지 또는 재개 절차 등) 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중단·폐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중단 또는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재개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광역센터 운영의 재개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단·폐지 또는 재개 발생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을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지정하거나 혹은 영 제8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 없이 제1항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직접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사본”을 “사본(법인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제2항 전단”으로, “공공기관”을 “기관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지역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 중 “공공기관”을 “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으로, “공고”를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제3호”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 및 제공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한 지역노후준비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중단 또는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재개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 운영의 재개 신청을 받은 경우 제 8조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단·폐지 또는 재개 발생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센터의 평가 방법)”을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센터”를 각각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센터의 평가를 마치고,”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로, “지체 없이”를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미리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센터의 분사무소인 지역센터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제6호까지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록·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따라”를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으로,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등”으로, “연금보험 정보(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를 “연금보험등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연금보험 정보에”를 “연금보험등 정보에”로, “연금보험 정보를”을 “연금보험등 정보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따른”을 “따른 광역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는”으로,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공고”를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조제5호”를 “법 제6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법 제10조 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별표 1의 제목 중 “지역센터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수요,”를 “수요, 광역센터 및”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광역센터 :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역센터 :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별표 1 제2호나목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	<삭 제>

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신설>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삭제>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호-----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제5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6.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
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

제7조의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
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
역센터”라 한다)는 별표 1의 시
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는 광역센터로 지정받
으려는 기관 등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지정하거나 혹은 영 제7조
의2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
청 절차 없이 제1항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직접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광역센터
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광역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관 등의 설립 목적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3. 그 밖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3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 및 제공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2.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구성한 광역노후준비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광역센터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제7조의4(광역센터의 중단·폐지

또는 재개 절차 등) ① 광역센
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중단·
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중단·폐지 또는 재개 3개월 전
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함하며 중단 또는 폐지의 경우
에 한한다) 또는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재
개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광역센터 운영
의 재개 신청을 받은 경우 제7
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하
고 결과를 통지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단·폐지 또
는 재개 발생 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
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
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
공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 4. (생 략)

--- 한다)는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지정하거나 혹은
영 제8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
른 신청 절차 없이 제1항의 기
준을 갖춘 기관을 직접 지역센
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

----- 기관 등-----

--- 시장 · 군수 · 구청장-----

1. ---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지역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2. 3.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지역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관 등-----

2. 3.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 공고
하고 중앙센터에 통보-----
-----.

⑥ ----- 제5항-----

----- 정한다.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

업)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
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
다.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
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생략)

<신설>

제10조(지역센터의 중단·폐지 또는
재개 절차 등) ① 지역센터
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폐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 및
제공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구성한 지역
노후준비협의체에 참여하는 기
관은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지원
사업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센터의 중단·폐지 또는
재개 절차 등) ① -----

--- 시장·군수·구청장-----

포
함하며 중단 또는 폐지의 경우
에 한한다) 또는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지역센터의 평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미리 작성하여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 운영의 재개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단·폐지 또는 재개 발생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미리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

②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지역센터의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9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

④ ----- 제1항-----

-----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

⑤ -----
-----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의 -----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센터의 분사무소인 지역
센터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달리 정할

<신 설>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

2. ~ 4.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15조(연금보험 정보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수 있다,

⑦ 그 밖에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

-----.

1. ----- 제6호까지
및 제9호-----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록·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연금보험 정보의 요청 등) ① -----
-----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14조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 (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 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들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역 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를」에 따른 공공기관 및 ----- 금융회사등----- 연금보험등 정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연금보험 등 정보-----

연금보험등 정보를 -----
-----.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

----- 광역 센터 및 지역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
분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
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
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노후
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
관리에 관한 사무

<신 설>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
분기준 등) ① -----
-- 따른 광역센터 또는 -----

-----.

②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센터에 한정한다)는 ---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
----- 공고하고 중앙
센터에 통보-----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
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제6호-----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

3. <u>법 제10조제2항</u>에 따라 지역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4. (생략)	<u>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 한 사무</u> 4. <u>법 제10조제1항</u>-----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364